

# 지리산 도벌사건과 산림정책의 변화\*

임 송 자\*\*

- I. 머리말
- II. 도벌의 만연과 산림의 황폐화
- III. 지리산 도벌사건
- IV. 지리산 도벌사건이 산림정책에 미친 영향
- V. 맺음말

## • 국문초록

예로부터 도벌과 남벌이 횡행하여 산림의 황폐화가 진행되었는데, 1960년대 민정이양기를 거쳐 민정 이양 후에는 보다 대규모로 자행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배경으로 한 대규모의 지리산 도벌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논문은 1964년 10월에 발생한 지리산 도벌사건을 구체적으로 조명하였다. 도벌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농림부 불하 경위와 도벌업체와의 유착관계, ② 배후권력과 도벌사건의 개입 여부, ③ 내무부는 도벌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가, ④ 서남흥업과 남선목재, 그리고 고위층의 개입 여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리고 지리산 도벌사건이 산림정책에 미친 영향도 살펴보았다.

지리산 도벌사건은 고위층이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대규모로

\* 이 논문은 200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결과물임(KRF-2007-361-AM0015).

\*\* 순천대 지리산권문화연구원 HK연구교수

도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은 지리산 빨치산 토벌에 족적을 남겼고 전북 경찰국장과 강원도 경찰국장을 지낸 신상묵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장경순이었다. 그는 5·16 쿠데타에 주체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하였으며 농림부장관을 지냈으며, 사건 발발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다. 따라서 도별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별업체와 고위층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것이었다. 그러나 검·경의 수사활동도 미온적이었고, 국회의 지리산도별사건조사특별위원회도 고위층의 유착관계를 뚜렷이 밝혀내지 못하였다.

지리산도별사건 이후, 정부는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조사·색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임산물 단속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1966년 3월 29일에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여 임산물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였다. 지리산 도별사건은 또한 산림청 신설을 촉발시키고, 화전 정리사업을 단행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임산물 단속에 대한 법령 강화, 산림청 신설, 화전 정리사업은 도별이나 남벌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는지라도 어느 정도 산림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는 있었다. 도별이나 남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목재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했으며, 또한 난방과 취사구조를 임산물 이용 방식에서 근대적인 연료 이용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었다.

## • 주제어

지리산, 도별사건, 산림정책, 임산물 단속, 화전정리사업, 신상묵, 장경순

## I. 머리말

근현대사를 거치면서 지리산은 은둔과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되었다. 두류산(頭流山), 방장산(方丈山)으로 불리기도 한 지리산은 은거하기에 유리한 곳이 많아 은둔의 장소로, 저항의 거점으로 이용되었다. 동학농민전쟁, 의병전쟁의 근거지로 역할을 했으며, 여순사건 뒤부터 한국전쟁기에 이르기까지 빨치산의 저항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된 곳이기도 했다.

이러한 지리산에도 1960년대 초에 이르러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경제개발이라는 국가의 지상목표 아래서 지리산 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그런데 지리산의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 1964년 10월에 대규모의 지리산 도벌사건이 일어났다. 국유림의 관리와 운영에서 최대의 허점을 드러낸 사건이었다. 권력형 부정과 비리가 개입된 것으로, 민정 이양 후 최대의 의혹사건이었다.

지금까지 지리산권 지역의 연구는 저항운동에 집중된 편이며, 1960년대 이후 지역개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논문은 지리산 도벌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리산 지역의 개발사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개발의 길목에 들어서면서 터져 나온 지리산도벌사건의 구체적인 전모, 그리고 이 사건이 미친 영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리산 도벌사건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제한적이다. 산림청의 발간물이나 산림 관계 전문가, 연구자들이 발표한 글에서는 지리산 도벌사건을 미비하게 다루고 있어 구체적인 전모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당시에 나온 여러 신문자료나 『智異山盜伐事件 調査特別委員會 會議錄』를 세밀히 분석하여 연구에 활용하고자 한다.<sup>1)</sup>

1) 국회는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964년 12월부터 1965년 3월에 이르기까지 3차에 걸쳐 조사하고 증언을 청취하였다. 이 기간 동안의 증언 청취를 속기록으로 정리한 것이 『智異山盜伐事件 調査特別委員會 會議錄』이다.

먼저, 해방 후 도벌과 남벌이 만연하여 산림이 크게 훼손되어 갔던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수사 현황을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서 지리산도벌사건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도벌사건과 고위층의 연루문제를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다. 셋째, 도벌사건의 핵심 쟁점을 ① 농림부의 불하 경위와 도벌업체와의 유착관계, ② 배후권력과 도벌사건의 개입 여부, ③ 내무부는 도벌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가, ④ 서남흥업과 남선목재, 그리고 고위층의 개입 여부 등으로 나누어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들과 관련 인물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 각 쟁점별로 약간의 내용에서 중복이 불가피하다. 마지막으로 지리산 도벌사건은 임산물 단속법 강화, 산림청 신설, 화전 정리사업 등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를 중심으로 산림정책의 변화상을 파악하고자 한다.

## II. 도벌의 만연과 산림의 황폐화

일제는 근대적인 소유권 확립을 명분으로 1908년 1월에 삼림법, 1911년 6월에 산림령을 공포하였으며, 1917년부터 1924년에 이르기까지 임야조사사업을 실시하였다. 임야조사사업 이후 사유림이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이는 조선인 임야소유자들에게 식림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각종 부과금, 조세를 전가하기 위한 목적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산림법에서는 촌락공용림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았으나 산림령 공포 때 촌락공용지의 존재와 입회권을 인정하였다. 촌락공용지는 임야 소유권 정리과정에서 행정동리유재산으로 규정되었다. 또한 일제는 1916년부터 1917년 사이에 도령(道令)으로 <사유림벌채취체규칙>, <사유림보호규칙>을 공포하

---

국회회의록은 1,000여 페이지(페이지마다 3단으로 구성)에 이를 정도로 방대하지만, 이 논문에서 활용가치가 높은 것은 1964년 12월의 회의록이라 할 수 있다.

여 사유림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다.<sup>2)</sup>

일제는 사유림을 대상으로 산림조합을 설치하였다. 산림조합은 산림녹화정책의 일환으로 식림을 강제하거나 입산을 금지하였고, ‘금벌(禁伐)주의’를 표방하였다.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조합비를 징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 대한 불만이 점차 고조되어 갔고, 1920년대 말부터는 산림조합비 납부를 거부하는 운동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일제는 지금까지 사유림에 대해 입산을 금지하고 ‘금벌주의’를 적용시켰던 정책을 크게 변화시켜 벌목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sup>3)</sup> 군수물자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려는 조치로써 국유림에서만이 아니라 사유림에서도 대대적으로 벌채가 행해졌다. 이로 인해 산림의 황폐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해방 뒤, 국민생활과 직결된 산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시행이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그러나 국가적인 혼란기를 틈타 도벌, 남벌이 거리낌 없이 행해져 산림의 황폐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미군정이나 이승만 정부는 도벌이나 남벌 단속에 주력하겠다고 표명했지만 이러한 언명은 실제로 철저히 지켜지지 못하였다. 감독기관의 감시가 철저히 못했을 뿐더러 단속인원도 부족한 상태였다. 오히려 단속을 나간 산림경찰이 금품을 강요하거나 도벌이나 남벌 행위를 덮어주는 사례도 많았다. 이로 인해 산림의 황폐화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으며, 한국전쟁기로 접어들면서 상황이 더욱 심각해졌다. 교전이 벌어지는 곳에서 산림의 파괴는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물질생활의 궁핍에 시달리던 국민들은 연료나 난방을 위해서, 혹은 손쉬운 돈벌이를 위해서 입목을 도벌하였기 때문이다.<sup>4)</sup> 따라서 산림의 황폐화를 막고 산림녹화를 위해서는 도벌과 남벌의

2) 최병택,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정책』, 푸른역사, 2010, 51~54쪽, 68~69쪽.

3) 앞의 책, 116쪽, 130쪽.

4) 任慶彬, 『山林盜伐防止와 燃料對策』, 『지방행정』 28권 319호, 1980.5, 22~23쪽; 권오태, 『도남벌 방지에 대하여』, 『산림보호』 54, 1970.10, 39쪽.

행위를 철저히 단속하면서 산림정책에 대한 근본대책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였다.

정부는 산림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1951년에 산림보호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다. 1961년 5·16 직후 군부세력은 ‘밀수’, ‘마약’, ‘깡패’, ‘사이비 기자’와 함께 ‘도벌’을 5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목하였으며,<sup>5)</sup> 6월에는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였다.<sup>6)</sup> 그리고 12월 27일에는 산림의 보호육성과 산림자원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 <산림법>을 제정하였다. 1962년에는 사방사업법을, 1963년에는 국토녹화촉진을 위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고,<sup>7)</sup>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산림의 황폐화를 막을 수는 없었다.

산림의 황폐화가 지속된 요인 중 하나로 도·남벌이 자리잡고 있었다. 난방이나 취사의 생활방식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근절할 수 없는 것이 도·남벌문제였다. 곳곳에서 크고 작은 도벌, 남벌이 성행하였다. 도시와 가까운 농촌지방에서도 도벌행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마을사람들은 생수를 베어 팔려 야음을 틈타 도시로 운반해 갔다. 이러한 행위는 생계를 위해 소규모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군에 의해 자행되는 도벌이었다. 한국 전쟁을 거치면서 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권력을 등에 업은 군인에 의해 자행되는 행위를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에 도벌이 만연했다. 군에 의한 도벌과 남벌은 후생사업이라는 명목에서 행해지고 있었는데, 이는 원래 극히 저렴한 부식비를 다소나마 조달하려는 목적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점차 군 간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악패로 변화하여 오랜 동안 물의를 일으켜 왔다. 후생 사업으로 군부대가 있는 곳에 숲이 남아나

5) 이우연,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일조각, 2010, 365쪽; 이계민, 『숨은 기적들: 숲의 역사, 새로 쓰다』, 나남, 2015, 37쪽.

6) 윤여창, 「한국의 산림녹화」, 『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29~30쪽.

7) 앞의 논문, 40쪽, 74쪽.

지 않는다고 해서 ‘인간 송충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였다.<sup>8)</sup>

군에 의한 도벌은 사회여론을 악화시켰고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논란의 쟁점이 되기도 했다. 1955년 3월 28일 국회본회의는 국방부 차관을 출석시켜 후생사업으로 빚어진 제반 문제를 질의하였다. 이 회의에서 강승구 의원(자유당)은 “군인의 후생사업에 관하여 불미한 소문이 많은데 첫째로 한 달에 추력(트럭) 한 대에 후생비 10만 원을 부대에 납부하고 3만 원을 헌병대에 납부하여 헌병 1명을 동승케 하고 검문소를 무사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는데 그 사실여부를 묻고저 한다. 군인 후생사업의 행패가 심하다. 무단벌목을 비롯하여 심지어 도적 행위도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발언하였다. 군부대와 헌병대에서 후생사업비 명목으로 부정하게 돈을 받았으며, 돈을 바친 사람에게 무단으로 벌목을 할 수 있도록 군이 협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정준모 의원(자유당)도 “남원에 있는 남부지구 경비사령부는 외국군원(外國軍援)에 의한 병기의 하나인 추력(트럭)과 휘발유를 소모시켜 가면서 무단벌목을 해서 후생사업을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sup>9)</sup> 군에서 직접 트럭을 동원하여 후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도벌하고 있는 행태를 질타한 것이다.

국회에서 군에 의한 후생사업을 중대문제로 거론하고, 도벌에 대한 사회여론이 악화되자 국방부는 1957년 1월 말일자로 후생사업을 폐지하고 이와 함께 실태조사반을 파견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렇지만 이후 후생사업은 근절되지 않았고, 1950년대 후반을 거쳐 196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4월혁명 이후에도 과도정부의 공백기를 이용하여 전국적으로 도벌이 횡행하고 지리산 일대의 국유림에서도 대규모로 도벌이 자행되고 있었다. 각 지구의 계엄사에서 산림도벌과 부정반출을 엄금한다는 요지의 경고문을 발표하였지만<sup>10)</sup>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그만큼 당국의 단속이 허

8) 趙甲濟,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3, 조선일보사, 1998, 116~117쪽.

9) “軍人 厚生事業 粗上에. 國會 對政府 質疑戰 辛辣”, <마산일보> 1955년 3월 30일.

술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권력을 배경으로 한 도벌도 도사리고 있어 쉽사리 단속망에 걸려들지 않았던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지리산 지역의 경우, 산청군 덕산면 중산리에 거주하는 지역민이 당국의 허가 없이 인부 10여 명을 동원하여 지리산 일대에서 도벌을 감행하여 산청방면으로 반출하였다.<sup>11)</sup> 또한 지리산 중턱에 위치한 화개면의 운수골, 범왕골, 대성골 등 여러 계곡에서 국유림을 도벌하였다. 이들 상습 도벌업자들은 현장에서 직접 제탄굴을 만들어 놓고 목탄을 제조하거나 제재기를 설치하여 삼자루 등을 만들어내기도 했다.<sup>12)</sup> 더욱이 도벌업자를 상대로 하는 음식점까지 들어서 있을 정도로 도벌이 광범하게, 그리고 대담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sup>13)</sup>

이러한 행위는 5·16 이후에 잠시 주춤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일간신문의 사설에서는 “5·16혁명 직후만 해도 길 걷는 나그네가 다리 아픔에 못 이겨 길옆의 나뭇가지를 꺾어 지팡이 삼은 죄로 군재(軍裁)에 회부된 일까지 있었음을 회상할 때 어찌하여 이렇도록 관기가 해이해졌는지 마치 딴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문만 같아 귀를 의심할 지경”<sup>14)</sup>이라고 한 것으로 보아도 능히 짐작할 수 있다. 이외에도 도벌이 일시적이나마 주춤했던 상황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중 하나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나주의 숲을 이루고 있는 부분은 상봉 둘레뿐이어서 3분의 2 정도의 산림면적이 10여 년 동안에 걸친 벌목으로 벌거숭이가 됐다. 대원사 사찰림 601정보 중에서 남은 것이라고는 절 둘레의 풍치림 10정보뿐이며 쌍계사의 송림과 죽림도 불교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흔적만 남겨놓았다.

10) “山林盜伐 등 嚴重團束 戒嚴司서 警告文 七號”, <마산일보> 1960년 5월 5일.

11) “智異山에 盜伐 尤甚”, <조선일보> 1960년 4월 21일.

12) “智異山에 盜伐 製材機까지 施設코 恣行”, <마산일보> 1960년 5월 25일; “도벌로 황폐되는 지리산일대 시급한 단속 기대”, <조선일보> 1960년 8월 30일.

13) “智異山은 벌거숭 盜伐과 亂伐은 마음대로”, <마산일보> 1960년 6월 7일.

14) “(사설) 智異山과 蔚珍郡의 大規模 盜伐事件”, <조선일보> 1964년 11월 17일.

정식허가를 얻은 벌채이전 무허가 도벌이전 간에 나무 찍는 소리에 날이 밝고 해가 지던 지리산의 나무경기는 씻은 듯이 없어지고 미처 반출하지 못한 나무며 숲이 군데군데 야적된 채로 옛 경기를 보여준다.

경남 전북 전남의 3개 도에 뻗친 지리산 연봉을 누비던 ‘스틸’과 ‘서스펜스’의 자동차 길이 혁명 이후로는 장작이며 재목을 실어 나르던 트럭 대열이 끊어진 때문에 황폐할 지경이다.<sup>15)</sup>

이렇듯 무허가 도벌이 횡행하여 지리산 대원사와 쌍계사의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지만 5·16 직후의 엄혹한 시절에 이러한 행위가 잠시 주춤했다. 그렇지만 도벌행위가 근절된 것은 아니었다. 도벌을 비롯한 산림범죄는 계속 이어졌다. 합법을 위장한 도벌이 줄을 이었고 문교부가 개입한 막강한 권력형 도벌이 행해져 여기에 가담한 업자가 3배의 폭리를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순천시 수해복구 용재로 쓰기 위해 벌채한다는 명목으로 중앙기관과 지방행정기관이 합작하여 도벌을 행한 경우도 있었다.<sup>16)</sup> 민정 이양 후에도 도벌행위는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고 있었다. 1964년 9월 말 현재 사건 건수는 16,679건이며, 산림의 피해 재적(材積)은 65,475m<sup>3</sup>로 1963년 동안의 피해 재적 45,340m<sup>3</sup>보다 9개월 동안에 20,000m<sup>3</sup>가 증가되었다. 산림범죄사건으로 1964년 9월까지 구속된 인원은 913명에 이르고 있으나 구속 인원의 거의 대다수가 하수인이나 농민들이며 상습적인 산림도벌업자가 구속된 경우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었다.<sup>17)</sup> 그만큼 크고 작은 권력형 도벌은 단속망에서 벗어나 있었다.

15) “開墾 ‘뽕’! 벌거숭이 智異山. 伐木景氣는 옛말 너도나도 火田民으로”, <조선일보> 1962년 3월 12일.

16) 산림청, 『대한민국 山 세계는 기적이라 부른다』, 1995, 50쪽.

17) “나날이 벌거벗는 錦繡江山 山林의 現狀·展望·對策을 훑어 본다”, <경향신문> 1964년 11월 18일. 1966년 1월의 좌담회에서 농림부 보호과장 李昌兩는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다. “산림은 권력을 배경으로 베어먹고 있습니다. 돈을 대어서 下手하여 하는데 잡히는 것은 하수인만 잡히고 장본인은 쑥 빠진다 이겁니다. 이놈을 잡아놓으면 어떻게 된 건지 곧 나오는데 이런 모순성을 시정토록 하지 않고서는 안됩니다.”. 座談會, 『燃料林과 山林保護의 效果的 達成方案』, 『산림보호』 10, 1966.1, 48쪽.

관광지인 설악산 신흥사 일대의 산림도 마구 도벌되고 있었고 심지어 대낮에도 수십 대의 리어카를 동원하여 참나무와 소나무 등을 운반하는 일까지 있었다. 경기도 여주 신록사 경내의 풍치림도 마을사람들에 의한 도벌이 행해지고 있었고, 고성군 화암사 일대의 풍치림도 도벌 때문에 고찰의 면모를 잃어가고 있었다. 화암사 골짜기에 참나무를 굶는 숫가마가 20여개 소나 있어 세인을 놀라게 했다. 범주사나 내장산에서도 도벌이 성행했고, 지리산에서는 하루에 수백여 명의 도벌꾼이 앞 다투어 도벌을 일삼았다.<sup>18)</sup>

이밖에도 대규모의 도벌행위가 전국의 여러 곳에서 일어났다. 도벌 수법은 각양각색이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도 산림과 직원이거나 영림서원을 매수하는 수법이다. 도벌단속을 감독하기 위해 출장한 도 산림과 직원이나 영림서원을 현장에서 매수하여 도벌을 자행하고 임산물을 반출하였다. 둘째, 부정임산물 단속에 걸려들 경우, 1963년 11월 말 이전에 벌채한 것으로 조작하는 수법이다. 이는 1963년 12월 14일에 공포한 사면령의 혜택을 입으려는 행위였다. 셋째, 정부 당국이 허가해 준 병충목 벌채를 핑계로 곳곳에서 허가기준을 무시하고 무차별적으로 벌채하였다. 이는 벌채허가를 악용하는 행위였다. 넷째, 개간을 구실 삼아 나무를 도벌하는 수법이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증산운동을 이용하여 도벌꾼들은 개간을 구실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았으며, 특히 ‘계단식 개간’을 빙자하여 무차별적으로 도벌을 일삼았다. 다섯째, 생나무를 벌채하고도 고사목으로 위장하는 수법을 이용했다. 도벌꾼들은 도끼로 나무를 깊이 찍어서 결국 말라 죽게 하여 이를 벌채하였다.<sup>19)</sup> 이렇듯 여러 가지 수법으로 도벌이 횡행하고 있는데도 당국은 속수무책이었다. 특히 지리산은 대규모 도벌단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으며, 산림의 황폐화도 그만큼 가속도가 붙었다.

18) “(사설) 盜伐은 團束할 수 없는 것인가”, <동아일보> 1964년 7월 23일.

19) 앞의 신문기사.

### Ⅲ. 지리산 도벌사건

#### 1. 사건 발생과 수사 현황, 그리고 관련자 처벌

지리산도벌사건은 1964년 8~9월경에 여러 방면에서 제기된 민원이나 청와대 진정, 또는 진주대학생의 화전마을 방화 등을 통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지리산 개발을 위해 측량을 하고 있던 공병대 소속의 한 장교가 도벌행위자들의 비행을 청와대에 직소한 것이 지리산의 도벌행태를 수사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도 한다.<sup>20)</sup> 그리고 전라남북도를 관장하고 있는 제1관구사령관 김익렬이 도벌 상황을 공중에서 촬영하여 청와대에 보고한 사실도 있다.<sup>21)</sup> 진주농대생들이 지리산을 보호하고 산림녹화를 위해 화전민촌에 방화한 사건이 도벌 단속의 단초였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있다.<sup>22)</sup>

여러 방면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청와대에 도벌사실을 알리는 보고가 들어오자 박대통령은 1964년 9월 말에 직접 비행기로 지리산 상공을 시찰하였다. 그는 공중에서 무자비한 도벌로 인해 수십 년, 수백 년생 아름드리나무가 베어져 흩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sup>23)</sup> 이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지시하게 되면서 세칭 ‘지리산 도벌사건’으로 확대되었다.

박대통령은 경북, 전북, 전남의 경찰국장에게 도벌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sup>24)</sup> 이에 따라 10월 20일 전국 시·도 경찰국장회의가 치

20) 白南柱 編著, 『疑惑 속의 20年』, 개조출판사, 1965, 281쪽; 산림청, 『대한민국 山 세계는 기적이라 부른다』, 53쪽.

21)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3호, 1964.12.9.

22) “智異山을 벗기는 人間벌레 이려고도 무슨 山林綠化인가”, <경향신문> 1964년 11월 14일.

23) 산림청, 『대한민국 山 세계는 기적이라 부른다』, 55쪽.

24) 청와대 비서관 오혁종이 국회조사특위에서 행한 진술에 따르면, 박대통령은 10월 7일자로 내각에 공문을 보내 지리산의 도벌을 비롯한 전국적인 도벌을 철저히 단속하라고 지시하였다.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

안국에서 개최되었으며, 박대통령은 경찰국장과 치안국장, 내무부 장관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 특명을 내렸다. 특명에 따라 전남·전북·경남경찰국장이 구례와 남원, 그리고 함양경찰서에 각각 부정임산물 특별단속 본부를 설치함으로써 지리산 도벌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었다.<sup>25)</sup>

지리산 도벌사건에서 가장 심하게 피해를 본 곳은 함양군 마천면의 강청리·삼정리·추성리 일대였다. 이곳에서 자행된 도벌의 행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도벌방법: 나무 밑동 껍질을 돌려 벗기거나 생나무를 자르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껍질이 벗겨지거나 톱에 잘린 나무는 몇 달 후 고사목이나 풍도목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러한 고사목이나 풍도목은 목도꾼에 의해 실려 나갔다.

(2) 영림서 직원이 도벌한 원목에 검인을 찍어 주어 도벌 원목이 공공연하게 반출되고 있었다.

(3) 수력발전소와 대규모 제재소까지 설치하여 무차별적으로 도벌하였다. 도벌목은 무허가 제재소에서 각목 또는 판자 등으로 다듬어져 남원을 거쳐 각지로 수송되었다.

(4) 산정에서 기슭까지 벌목을 운반하는 목마로(木馬路)를 설치하여 도벌목을 운반하였다. 경사진 곳은 밑에서 줄을 당겨 풀어주면서 하산시키는 원리를 이용하였다.

(5) 관광도로와 산업도로를 닦아 도벌원목을 운반하는 도로로 사용하였다. 이 도로는 덕전리에서 목재 집재장인 백무동까지 6km의 경사 30도의 산길을 1964년 3월 15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남선목재로부터 70만원을 받고, 또 구호양곡을 방출하여 길을 넓히고 닦은 것이다.<sup>26)</sup>

---

錄』 제6호, 1964.12.14.

25)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8호, 1964.12.19; 산림청, 『대한민국 산 세계는 기적이라 부른다』, 55쪽.

26) “발가벗기는 智異山 盜伐 裏面…現地 르포”, <동아일보> 1964년 11월 9일; “智

경찰이 항공기를 동원하여 지리산 일대를 정찰하며 대대적으로 단속 활동을 펼친 결과 29~30일 이틀 사이에 220여 명의 도벌단이 적발되고 이 중에서 6명이 구속되었다.<sup>27)</sup> 이후 수사는 계속 확대되어 10월 31일부터 11월 4~5일 사이에 적발, 검거된 도벌단은 294건이었으며, 관련자는 339명에 이르렀다. 이 중에서 20명이 구속되었고, 249명이 불구속 입건되었다.<sup>28)</sup>

수사당국은 대규모 도벌행위를 방임한 현지 영림서 직원과 산림계 직원에 대한 수사에도 착수하였으며, 남선목재 소속 도벌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다. 치안국은 11월 17일까지 전국에서 2,106건을 적발, 2,271명을 검거하였다. 이 중에서 68명을 구속하고 651명을 불구속 하였으며 나머지를 즉심에 넘겼다. 지리산에서만 1,000건을 적발하고, 1,060명을 검거하였는데 이 중에서 49명을 구속하고 487명을 불구속입건 했다.<sup>29)</sup>

그런데 11월 중·하순에 이르러 수사상황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였다. 사건의 핵심인물을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위층으로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막후권력이 수사당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 도벌을 위해 도로를 닦고, 케이블카(삭도)를 가설하고, 댐을 건설하고, 제재공장을 설치하였는데, 이는 말단 공무원의 양해와 묵인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도벌의 규모로 봤을 때 권력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범죄행위였으므로 고위층의 연루 여부를 파헤쳐야 했는데도 이를 방치한 것이다.

11월 중순에 언론에서는 사건에 고위층과 국회의원이 연루되었다고 크

---

異山을 벗기는 人間벌레 이려고도 무슨 山林綠化인가”, <경향신문> 1964년 11월 14일.

27) “智異山에 대규모 盜伐團”, <경향신문> 1964년 10월 31일.

28) “智異山 중턱에 發電所와 製材所까지”, <경향신문> 1964년 11월 5일.

29) “68名 拘束 全國 盜伐 團束”, <경향신문> 1964년 11월 17일; “關聯者 68名 拘束. 9百62트럭 押收”, <조선일보> 1964년 11월 18일.

게 보도하였다. <경향신문>은 11월 17일자에서 지리산도벌사건의 배후에 농림부 고위층이 개입되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대검찰청에서 조태형 검사를 현지에 파견하여 수사하도록 하였다는 내용을 보도하였다.<sup>30)</sup> 그리고 전북경찰국장이 “이 사건의 핵심은 고위층에 있다.”고 지적하고, “대규모 도벌의 이면에는 모당 국회의원 수명과 정부 고위층이 배후에 관련된 것으로 보고 내사에 나섰다.”고 보도하였다. 이어 <조선일보>는 11월 19일자에서 서남흥업과 남선목재의 배후로 공화당 서모·민모·장모 의원과 정부 고위관리 박모, 그리고 농림부 고위관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도하였다.<sup>31)</sup> 이러한 언론의 보도는 지리산 도벌사건에 고위층이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일반인의 심증을 굳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과 고위층 연루문제는 오리무중에 휩싸였고, 결국 농림부 산림국장, 전 영림서장 선에서 수사를 종결하고 관련 국회의원으로써 수사를 확대하지는 않았다.

1965년 2월 19일, 부산지법에서 지리산도벌사건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농림부 임산과장 김철영, 전 서울영림소장 황석규, 신상묵 등 37명(구속 30명, 불구속 7명)을 대상으로 산림법 위반, 국유재산 위반, 직무유기, 허위문서 작성 등의 피소 사건에 대한 심문이 진행되었다.<sup>32)</sup> 이어 3월에는 사실심리 공판을 몇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4월 23일에는 결심

30) “大檢査 搜查 曠守 趙台衡 檢事 現地로 파견”, <경향신문> 1964년 11월 17일; “智異山 盜伐事件 大檢査 搜查 指揮”, <조선일보> 1964년 11월 18일.

31) “國會議員 3名 관련 確實. 農林部 山林局長 職務遺棄 혐의도 뚜렷”, <조선일보> 1964년 11월 19일. “서모·민모·장모 의원”은 서인석, 민병권, 장경순을 지칭한다. 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며, 민병권과 장경순은 11월 28일과 12월 7일에 열린 국회에서 각각 지리산도벌사건과 무관하다는 신상발언을 하였다. 國會事務處, 『國會 會議錄』 제45회 24호, 1964.11.28; 國會事務處, 『國會 會議錄』 제45회 39호, 1964.12.7; ““盜伐 關聯은 순전한 虛偽” 세 議員 聲明”, <동아일보> 1964년 11월 20일; “關聯說 부인 張·閔·徐 議員”, <경향신문> 1964년 11월 20일.

32) “智異山盜伐사건 첫 公判 被告 무려 37名 辛被告는 고개 숙여”, <동아일보> 1965년 2월 19일.

공판을 개정하여 38명의 피고 중 35명에게 최고 징역 3년에서 최하 8월을 구형했으며,<sup>33)</sup> 5월 6일에 피고인 38명 중 10명에게 실형, 22명에게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 5명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sup>34)</sup> 이들 피고인에 대한 구형량과 선고량을 정리하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지리산 도벌사건 피고인의 구형량과 선고량

	구형량 / 선고량
농림부	① 김철영(임산과장):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집유 3년, ② 김용건(임업기사): 징역 8월 / 벌금 8천원, ③ 강경원(임업기사, 불구속): 징역 10월 / 징역 8월 집유 2년
영림서	① 황석규(전 서울영림서장): 징역 2년 / 무죄, ② 이흠(전 서울영림서장): 징역 2년 / 징역 1년 집유 3년, ③ 홍순강(전 조림과장): 징역 1년 / 징역 10월 집유 2년, ④ 민영운(전 임산과장): 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집유 2년, ⑤ 김승곤(산림보호서기): 징역 1년 / 징역 10월 집유 2년, ⑥ 권오형(전 남원관리소장): 징역 1년 6월, ⑦ 박희춘(남원관리소장): 징역 1년 6월 / 징역 1년, ⑧ 김종인(마천분소장): 징역 1년 / 징역 1년 집유 3년, ⑨ 김해수(서울영림서 기사): 징역 10월 / 징역 8월 집유 2년, ⑩ 이철수(전 남원관리소 마천분소장): 징역 8월 / 징역 8월 집유 2년, ⑪ 장재수(전 남원관리소 차석): 징역 10월 / 징역 10월 집유 2년
남선목재	① 장인섭(상무): 징역 3년 / 징역 2년, ② 김학숙(기획부장): 징역 1년 / 징역 10월 집유 2년, ③ 손창주(업무부 차장):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 ④ 강갑철(남원출장소장):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⑤ 전재근(하청업): 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집유 2년, ⑥ 김재열(하청업): 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집유 2년
서남흥업	① 안치연(사장): 징역 3년 / 징역 3년, ② 길병래(전무): 징역 2년 6월 / 징역 1년 6월, ③ 강재성(업무부 차장): 징역 2년 6월 / 징역 2년, ④ 양규선(총무부장): 징역 2년 / 징역 1년 6월, ⑤ 신상목(회장): 징역 1년 / 무죄
함양군, 함양경찰	① 엄형휴(군수, 불구속): 징역 8월 / 무죄, ② 광성준(마천면장, 불구속): 징역 8월 / 무죄, ③ 이갑선(마천지서장): 징역 8월 / 무죄 ※ ㉠ 김주상(전 건설과장): 징역 1년 / 징역 6월 집유 2년, ㉡ 유수홍(산림보호주사보): 징역 1년 / 징역 10월 집유 2년, ㉢ 이병천(산림보호서기보): 징역 1년 / 징역 10월 집유 2년

33) 전국에 수배 중이었던 하청업자 한우상이 3월 3일에 산림법 및 국유재산법 위 반혐의로 구속됨으로써 지리산도벌사건 관련 피고가 37명에서 38명으로 늘었다.

34) “35被告에 體刑 구형”, <경향신문> 1965년 4월 24일; “最高 3年서 8月. 智異山 盜伐사건 35被告에 體刑을 求刑”, <동아일보> 1965년 4월 24일; “10名에만 實刑 最高 3年”, <동아일보> 1965년 5월 7일; “최고징역 3년까지 10名에 實刑”, <경향신문> 1965년 5월 7일.

제재업, 운수업	① 박계륜(제재업): 징역 1년, ② 강화춘(농업): 징역 10월 / 징역 8월 집유 2년, ③ 박윤천(운전사, 불구속): 징역 8월 / 징역 6월 집유 2년, ④ 김인식(운수업, 불구속): 징역 10월 / 징역 8월 집유 2년, ⑤ 김진욱(운전사, 불구속): 징역 8월 / 징역 6월 집유 2년, ⑥ 박상내(제재업): 징역 10월 / 징역 10월 집유 2년, ⑦ 한우상(하청업): 징역 1년 6월 / 징역 10월 집유 2년
-------------	---

위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리산 도벌사건의 중심인물인 신상목을 비롯하여 전 서울영림서장 황석규와 이흠, 그리고 농림부 임산과장 김철영 등이 무죄 혹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러한 선고에 불복하여 5월 14일에 부산지검 김인규 부장검사가 관련 피고인 38명 중 안치연을 제외한 37명의 피고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함으로써<sup>35)</sup> 항소심 재판으로 이어졌다. 8월 31일에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피고 10명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였고, 신상목·황석규 등 7명을 법정구속하였다.<sup>36)</sup> 그러나 이들은 즉각 상고하였다. 1965년 12월 10일에 열린 상고심 판결 공판에서 신상목·이갑선 두 피고인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김철영·황석규 등 4명의 피고에 대해서는 부산지법으로 환송하였다. 황석규는 다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다. 결국 1966년 7월 6일의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때 김철영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sup>37)</sup>

35) “檢察서 公訴 제기. 智異山盜伐 37被告 判決에 不服”, <동아일보> 1965년 5월 14일.

36) “7名을 法廷拘束”, <동아일보> 1965년 8월 31일; “辛相默 등 7名 法廷 구속 原審 파기 實刑 宣告”, <경향신문> 1965년 8월 31일. 법정구속자는 다음과 같다. 장재수(전 남원관리소 차석) 징역 8월, 김종연(마천분소장) 징역 10월, 김철영(농림부 임산과장) 징역 10월, 이흠(전 서울영림서장) 징역 1년, 김학숙(남선목재 기획부장) 징역 10월, 신상목(서남농업 회장) 징역 10월, 황석규(전 서울영림서장) 징역 2년.

37) “上告棄却 무죄 宣告 黃碩奎 등 두 被告”, <동아일보> 1966년 7월 6일.

## 2. 국회의 조사특위 구성과 활동

1964년 11월 중순에 이르러 지리산 도벌사건이 정부 고위층과 국회의원이 관련된 것으로 확대되자 국회는 도벌사건을 중대시하고 대응책을 모색하였다. 이종근 의원은 지리산도벌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자고 발의하였으며,<sup>38)</sup> 사건 가담자를 ‘공산당보다 더 중한 역적’으로 규정하였다. 김영삼·박찬·김삼 의원 등 야당 소속의 농림위원들도 차균희 농림부장관에 대한 불신임 건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sup>39)</sup> 또한 여·야당의 간부는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를 철저히 색출, 처단하는데 국회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국회 농림위원회는 국회조사단 구성결의안을 본회의에 내놓기로 결정하였다.<sup>40)</sup>

이렇게 여·야당의 의견이 일치하여 지리산 도벌사건의 진상규명에 적극성을 보였지만 얼마 후 공화당의 소극적, 부정적인 태도로 제동이 걸리기 시작하였다. 공화당 소속 국회의원 몇 사람이 배후에서 작용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조사단 구성을 둘러싼 여당과 야당 사이의 갈등·대립이 일어난 것이다. 공화당이 선뜻 조사단 구성에 응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어 배후 혐의는 더욱 짙어갔다. 결국 국회조사단 파견 결의안은 지연을 거듭하다가 12월 7일에 이르러서야 채택되었다. 조사단은 9명으로 구성하고, 조사위원은 농림·내무·법사위원 중에서 선임하도록 했으며, 조사기간은 12월 7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으로 정하였다.<sup>41)</sup> 그리고 조사단을 파견하기 전에 농림부·내무부·법무부 등 관계

38) 이종근은 육사8기 출신의 민주공화당 소속 의원이다. 대한민국헌정회 홈페이지 (<http://www.rokps.or.kr>, 2016.12.10).

39) “共產黨보다 더한 逆賊”, <동아일보> 1964년 11월 17일; “山林行政 전면 再檢討 智異山盜伐事件 계기”, <동아일보> 1964년 11월 17일.

40) “智異山 盜伐 國會調查團 派遣키로”, <경향신문> 1964년 11월 18일.

41) “智異山盜伐事件 調查團 派遣키로. 與野 九名으로 構成”, <마산일보> 1964년 12월 7일; “김빠진 智異山盜伐 調委”, <동아일보> 1964년 12월 16일; “旅費 過少 策定 때문? 智異山 盜伐 國會調委, 現地出張 忌避”, <경향신문> 1964년 12월 16

장관을 불러 수사 진척상황을 파악한 후에 현지에 내려가는 것으로 결정하였다.<sup>42)</sup>

1964년 12월 7일에 구성된 조사특위는 1965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조사와 증언취취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조사기간을 연장하였는데, 그만큼 도벌사건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고위층 개입을 은폐하고 사건을 축소시키려는 정부 측과 수사당국에 대응하여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에 비례하여 조사기간이 길어졌던 것이다. 조사특위 활동에서 제1차는 12월 8일부터 21일까지 9일간, 제2차는 1965년 1월 5일부터 1월 18일까지 12일간, 제3차는 1월 25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의 증언자로 나온 사람은 차균희(농림부장관), 양찬우(내무부장관), 민복기(법무부장관) 등 정부 측 관료를 비롯하여 삼성흥업, 남선목재 등 도벌업체 관련자, 검찰과 경찰당국자, 도벌사건에 연루된 농림부나 영림서 관계자 등 총 82명에 이르렀는데, 이들 중에서 몇 명은 2회~4회에 걸쳐 증언대에 서야 했다.

조사특위 활동의 초점은 도벌사건과 고위층의 연루문제를 파헤치는데 있었지만 여야 조사위원들은 고위층이 관련되었으리라는 심증만 확보했을 뿐 구체적인 증거를 잡아내는 데는 실패했다. 그렇지만 조사과정에서 몇 가지의 사실을 밝혀내어 약간의 실적을 올리기도 했다.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부산 현지에서 활동한 조사특위는 심종섭 산림국장이 도벌사실을 인지하였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사실과 청와대 농림부 연락관 오혁중이 10월 8일 엄병건 임정과장에게 업자의 편 의와 부정을 은폐해 달라는 암시적 전화를 하여 직권남용을 했다는 새로운 사실을 밝혀냈다.

일. 국회 지리산도벌사건특별조사단은 宋寬洙·金重煥·李鍾根·金鍾茂(이상 공화당), 金三·柳致松·陳馨夏(이상 민정당), 張致勳(민주당), 閔泳南(무소속)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후 12월 15일에 민영남 의원 대신에 공화당 崔瑞日 의원으로, 장치훈 의원 대신에 민주당 崔泳謹 의원으로 교체되었다.

42)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2호, 1964.12.8.

한편 조사특위는 도벌사건에 고위층이 개입하였다는 심증을 확보하였지만 검찰에서 근거를 포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신상목(서남흥업회사 회장)·김학숙(남선목재 기획부장)·오혁중(청와대 농림부연락관) 등이 고위층 관련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열쇠인데도 검찰이 이들에 대해 미온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신상목·김학숙 등을 체포하고 농림부 주무국장, 삼성흥업, 서남흥업, 남선목재 등 도벌 관련 회사의 상무급 이상을 먼저 조사하라고 주장하였다.<sup>43)</sup> 또한 전 함양군수 엄형휴를 공문서위조 및 직무협의로 검찰에 입건하도록 통고하고, 전 마천지서장 이갑선 경위를 구속하여 수사하라고 요청하기도 했다.<sup>44)</sup>

제2차 조사기간 동안에는 전주·남원·함양 등 사건 발생지를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져, 현지 경찰이 도벌관계자에게 돈을 요구하였으며 목재소 운영에 투자하였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김학숙의 증언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현지 경찰이 6개의 제재소를 운영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자금을 투자하여 직접 관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sup>45)</sup> 한편 1월 13일의 조사특위 증언청취 과정에서는 함양군 산림조합장 임종삼의 증언을 통해, 장경순이 사건에 개입되었을 것이라는 심증을 확보했다. 이후 조사특위는 장경순이 차관까지 결재된 불하신청승인서를 보류시켰다가 황석규의 청탁을 받고 결재해 준 사실을 포착하였지만 장경순이 배후 권력으로 사건에 개입했는지를 밝혀내는 데는 실패했다.

2차에 걸친 현지조사와 2개월 동안의 조사를 마친 조사특위는 1월 23일 비공개로 사건 관련자로 보도된 바 있는 국회의원들의 증인채택 여부를 토의하였다.<sup>46)</sup>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는지, 그리고

43) “智異山盜伐事件 搜查 基本方向부터 是正돼야. 國會調委 檢·警察의 微溫的 態度 指摘”, <마산일보> 1964년 12월 9일.

44) “智異山盜伐事件 搜查 擴大될 듯”, <마산일보> 1964년 12월 22일.

45) “智異山 盜伐의 調査委 證言서 製材所에 投資도 現地 警察官이 돈을 要求”, <마산일보> 1965년 1월 17일.

실제로 증언청취가 이루어졌는지, 만약 증언청취가 있었다면 사건 연루자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어떠한 발언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시점에서 조사특위는 활동을 마무리하기 위한 수순을 밟았다. 조사 일정을 2월 말까지 연장하여 그동안의 활동을 정리하는 작업을 한 것이다. 이로써 12월 7일부터 약 3개월 동안의 조사특위 활동은 막을 내렸다.

### 3. 핵심 쟁점별 사건 분석

#### 1) 농림부의 불하 경위와 도벌업체와의 유착관계

지리산 도벌사건의 초점은 농림부와 서울영림서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농림부 산하 서울영림서가 지리산 국유림에 대한 관리권을 농촌진흥청으로부터 1962년에 인계받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리산 도벌사건의 발단은 고사목이나 풍도목을 업체에 불하하는 과정에서 비롯되었다. 서울영림서는 1963년 6월 25일자로 대지임업주식회사 양길용에게 경남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추성리·삼정리 일대의 임야에 산재해 있는 풍도목·벌도목·고사목을 440만원에 불하하였다. 그러나 불하대금을 납부하지 않아 불하가 취소되고, 9월 4일에 삼성흥업 정기성이 불하를 받게 되었다. 여기서 석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원래 1963년 8월에 영림서장 황석규의 약속에 따라 강청리·추성리·삼정리 일대의 주민들이 풍도목·벌도목·고사목을 무상으로 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삼성흥업으로 넘어갔던 것이다. 모종의 권력이 불하과정에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삼성흥업은 다시 불하받은 대상목을 서남흥업 사장 안치연에게 1963년 10월 초에 240만원을 받고 매각하였다. 안치연은 또다시 1964년 3월 4일에 남선목재 사장 장영섭에게 420만원에 매각하였다. 불하받은 남선목재

46) “國會議員 證人 與否 檢討. 智異山盜伐事件調委 非公開裡”, <마산일보> 1965년 1월 24일.

는 서남흥업에 하청을 주었으나 하청계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64년 8월 14일부터 남선목재가 직접 경영하였다.<sup>47)</sup>

이렇게 여러 차례 매수와 매각을 되풀이 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용하고 검은 돈이 거래되었다. 더욱이 농림부 예규나 통례를 볼 때, 채벌기간 연기는 한번 밖에 할 수 없었는데도 제1차로 1963년 9월 4일부터 1964년 4월 3일까지, 제2차로 6월 16일까지, 제3차로 9월 26일부터 10월 27일까지 연기시켜 주었다.<sup>48)</sup> 이러한 사실에서 농림부 고위관리와 업체의 유착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산림을 관리하는 최고기관으로서 농림부가 도벌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관심사였다. 도벌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전국 각지에서 도벌이 횡행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고발도 있었는데 농림부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사실상 도벌 사건이 일어나기 전인, 8월 3일에 내무부 치안국 첩보에 따라 지리산 일대에서 도벌이 일어난다고 있다는 사실을 농림부에서 인지하였다. 이에 농림부는 전북·전남·경남의 각 지사에게 사실여부를 조사하여 보고하도록 조치하였고, 서울영림서에도 똑같은 지시를 내렸다. 그런데 “현지에 아무 이상이 없”다는 보고가 올라왔다.<sup>49)</sup> 그리고 10월 초에 농림부 자체에서도 관련 공무원을 현지에 파견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는데, “일부 생목이 섞여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은 분간은 잘 안 됩니다.”라는 내용의 보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실에서 전북·전남·경남의 각 지사가 허위보고서를 올렸거나 임무를 방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농림부도 조사를 미온적으로 행하였고, 조사보고서를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도벌이 곳곳에서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한 것은 중앙과 도 사이에서 모종의 묵계가 있었으며,

47)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3호, 1964.12.9.

48) 白南柱 編著, 『疑惑 속의 20年』, 279쪽; “‘傷處’의 밑바닥을 캐본다. ‘松虫’의 ‘바톤’ 세 바퀴 돌고 허물 못 벗는 세 長官·네 國會議員 介在說”, <동아일보> 1964년 11월 19일.

49)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2호, 1964.12.8.

여기에 고위층이나 국회의원이 배후권력으로 작용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농림부와 서울영림서를 비롯한 관계 기관의 목인이나 개입 없이 대규모의 도벌행위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벌사건이 확대되어 한창 수사가 진행되고 있던 11월 13일부터 농림부는 현지조사를 하였는데, 이때 농림부 조사단(전국의 영림서원 60명)은 증거인멸에 나서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은 14일에 밝힌 하삼식 경남경찰국장의 지적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sup>50)</sup>

지리산 도벌사건에서는 불하 당시 농림부 장관을 지낸 장경순이 주목을 받았다. 장경순은 1961년 5월부터 1963년 7월까지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하였다. 장 장관과 농림부 산림국장 심종섭은 같은 고향 사람으로 친분이 두터웠다. 이러한 관계는 장경순이 자신의 회고록에서 “당시 농림부 산림국장은 심종섭 씨로, 나와 동향이었다. 수원농대와 미국 예일대학 출신이고, 산림분야에 관한 한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권위자였으며 나중에 나의 천거로 전북대학교 총장도 역임했다.”고<sup>51)</sup> 서술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 또한 장경순은 영림서장을 지낸 황석규와도 배재중학 동기동창이었다.<sup>52)</sup>

장경순이 농림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백운산농장을 경영하는 김서정에게 경남 함양군 마천면 지리산 일대의 고사목과 풍도목에 대한 별채허가를 주선해 준 것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회고록을 통해 도벌사건에 책임이 없다고 강변하면서<sup>53)</sup> 그 구체적인 실상을 은폐하였다. 그는 농림부장관직을 1963년 7월에 사임한 이후 국가재건최고회의 운영기획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9월부터는 공화당 사무총장으로 일했다. 그리고

50) “農林部 調査班은 엉뚱한 짓. 真相糾明 뒷전에...證據인멸에 애써”, <조선일보> 1964년 11월 15일; “(사설) 暗澹한 智異山盜伐 後聞”, <동아일보> 1964년 11월 16일.

51) 장경순, 『나는 아직도 멈출 수 없다』, 오늘, 2007, 105쪽.

52) “張珩淳 副議長 喚問”, <동아일보> 1965년 1월 11일.

53) 장경순, 『나는 아직도 멈출 수 없다』, 112~114쪽.

1963년 11월 26일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전북 김제에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이후 그는 국회부의장으로 활동하였다.

이렇듯 막강한 권력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장경순은 지리산도벌사건으로 입건조차 되지 않았다. 수사는 산림국장 선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흘렀다. 이리하여 치안국은 1차 불하 때부터 농림부 산림국장을 맡고 있던 심종섭을 조사하였고, 11월 26일에 배임혐의로 입건하였다.<sup>54)</sup> 12월 중순 부산지검에서는 서울영림서장 이흠이 도벌사건을 사전에 알고도 방임했다는 이유를 들어 그를 직무유기로 구속하였다. 12월 17일에는 농림부 임산과장 김철영, 기사 김용견, 영림서 기사 김해수 등 3명을 구속기소하였다. 그리고 1965년 1월 3일에 전 영림서장 황석규를 구속하였다. 지리산 지구 고사목을 헐값으로 불하해 준 대가로 삼성홍업 정기봉으로부터 18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서울지검은 장경순을 1월 10일에야 소환하여 신문하였으나 장경순은 관련설을 부인하였다.<sup>55)</sup> 그런데 1월 13일의 조사특위 증언청취 과정에서 나온 함양군산림조합장 임종삼의 증언은 장경순의 개입 여지를 넓혀주고 있다. 증언대에서 임종삼은 “농림부 차관과 심종섭 산림국장은 함양산림조합에 불하키로 내약했었으나 당시 서울영림서장인 황씨가 산림조합은 돈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고 증언한 것이다.<sup>56)</sup> 그렇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국회 조사특위는 장경순이 차관까지 결재된 불하신청승인서를 보류시켰다가 황석규의 청탁을 받고 결재해 준 사실을 포착하였지만 장경순이 도벌사건의 배후권력으로 작용하였다는 명확한 물증을 잡아내지는 못했다.

주목되는 점은 황석규가 삼성홍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구속되었으나 1963년 12월에 공포된 ‘사면령’에 의해 풀려났다는 점이다. 정부가 1963

54) 심종섭은 1965년 2월 12일자로 농림부산림국장직에서 면직되었다. 그 후임으로 총무과장 趙漢旭을 승진 발령했다.

55) “智異山 盜伐사건 國會副議長 張垞淳씨 訊問”, <경향신문> 1965년 1월 11일.

56) “처음에는 關聯 咸陽山林組合長 國會調査委 증언”, <동아일보> 1965년 1월 13일; “智異山 伐採 許可 高位層 關聯?”, <경향신문> 1965년 1월 13일.

년 12월 14일에 제3공화국 탄생을 기념하여 공포한 ‘사면령’의 혜택을 특  
 특히 본 것이다. ‘사면령’의 대상은 군정 2년 7개월 동안에 있었던 세칭  
 4대의혹사건, 선거사범 등을 포함하고 있어 “사법의 권위를 파괴, 무법천  
 지를 만드는 것”으로, “국가기강을 문란하는 일대 모험”으로 비판받아 왔  
 다. 그런데도 지리산 도벌사건의 중심인물인 황석규는 이러한 ‘사면령’의  
 보호를 받은 것이다. 그렇지만 이후 황석규의 죄목이 추가로 드러나 구속  
 을 면하지는 못하였다. 그는 영림서장으로 재직할 때인 1964년 3월 17일  
 에 벌채목 반출허가신청을 받았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산림보호 서기  
 를 시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벌채목 중에 불하목이 아닌 소  
 나무 원목 등 93m<sup>3</sup>(시가 30만원)가 섞여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런데도  
 황석규는 그대로 3월 25일에 반출허가를 내주었고,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  
 업무상 배임과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되었다.<sup>57)</sup>

## 2) 배후권력과 도벌사건의 개입 여부

수사선상에서 초미의 관심사는 신상묵이라는 인물과 도벌사건과의 관  
 련성이었다. 신상묵은 1951년 7월에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제2대 사  
 령관으로 부임하여 빨치산 토벌에 족적을 남긴 인물로, 빨치산 토벌을 위  
 해 ‘귀순 빨치산’을 중심으로 ‘보아라부대’를 조직한 것으로도 유명하  
 다.<sup>58)</sup> 이후 그는 전북 경찰국장과 강원도 경찰국장을 지냈다. 그가 “박대  
 통령과 대구사범 동창이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두텁다.”고 자처하였으며,  
 군 출신 정치인과의 친분이 두터웠기 때문에<sup>59)</sup> 배후권력으로서 지리산

57) “主動人物로 알려진 前 서울營林署長 黃碩奎씨를 구속”, <동아일보> 1965년 1월 16일; “智異山 盜伐사건 前 서울營林署長 黃碩奎씨 구속”, <경향신문> 1965년 1월 16일.

58) 신기남, 「빨치산 토벌대 ‘지리산 보아라부대’」, 『역사비평』 2, 1988, 390~391쪽; 金瑩筆, 『燈불을 찾아서(돌아온 빨치산의 手記)』, 한국출판사, 1952 참조.

59) “‘傷處’의 밑바닥을 캐본다. 허물 못 벗는 세 長官·네 國會議員 介在說”, <동아일보> 1964년 11월 19일; “열쇠 쥔 人物 警察界 15年の 辛相默”, <경향신문> 1964년 11월 20일. 신상묵은 1940년 日軍에 자원 입대하여 헌병 曹長으로 해방

벌목사건에 깊이 개입하였을 것이라는 것이 당시의 지배적인 여론이었다.

수사 초기부터 수사진은 삼성홍업이 서남홍업의 안치연에게 불하목을 매도했을 때, 그리고 이를 다시 서남홍업이 남선목재로 양도했을 때 신상목이 이권을 노려 개입하였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신상목은 또한 도벌목 운반에 이용됐던 산업도로 시공에도 깊이 개입하였다. 1964년 3월 15일부터 5월 25일 사이에 남선목재에서 70만원, 그리고 함양군수로부터 구호양곡인 소맥분 24석을 받아서 마천면 삼정리에 산업도로를 시공했는데,<sup>60)</sup> 이러한 산업도로 건설에 서남홍업 회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던 신상목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일로 신상목은 함양군수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하였다. 따라서 도벌업체와 지방행정관과의 유착관계, 그리고 이를 매개한 신상목의 역할을 파헤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신상목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았다. 양찬우 내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이 사람(신상목)도 지리산의 개발에 대해서 한몫해야 되겠다고 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것이 그 저의가 어디에 있었던 간에 순수하게 그 현지에 있는 군수나 면장이 그렇게 받아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는 것”이라면서 법적으로 구속할만한 조항이 없다고 발언하였다.<sup>61)</sup> 신상목도 11월 20일에 경찰에 출두하여 “서남홍업 전무 길병래 씨의 부탁으로 남선목재를 소개해 준 데 불과하며 도벌목 운반에 쓰인 문제의 관광도로는 단순히 주민들의 요청으로 관계자들에게 개설을 부탁했다.”면서 자신은 도벌사건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부인하였다.<sup>62)</sup>

---

을 맞았다. 1945년 11월에 경찰에 들어가 제주경찰국장, 전남북경찰국장, 치안국경비과장, 강원경찰국장, 충남경찰국장을 지내는 등 15년간 경찰관 생활을 하였다.

60) 당시의 嚴亨休 함양군수는 도로공사에 동원된 연인원 3천명에게 구호용 밀가루 20여 석을 분배해 주었다. 일부 주민들은 “강제 부역을 당했다.”고 불평하였으며, 길 닦는데 동원되어 하루 품삯으로 밀가루 두되와 50원에서 80원 가량을 받았다고 밝혔다. “智異山을 벗기는 人間벌레 이려고도 무슨 山林綠化인가”, <경향신문> 1964년 11월 14일.

61)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3호, 1964.12.9.

62) “辛相默씨 自進出頭 西南興業 安·李 兩 專務도”, <동아일보> 1964년 11월 21

검찰에서도 신상목을 비호하여 “동 사건과 직접적 관계가 없으며 길병래를 남선목재에 소개했을 뿐 아무 혐의도 발견 안 돼 입건도 않았다.”고 밝혔다.<sup>63)</sup> 여기에 고무된 신상목은 오히려 “도벌 선동범인 양 억지 범죄를 구성시키려고 불법적 수사지휘를 내리고 개인의 명예와 비밀을 파괴, 범죄사실을 날조하여 개인의 관운 영달을 꾀하려는 현지 경찰 간부를 걸어 명예훼손 및 직권남용죄로 고소하겠다.”고<sup>64)</sup> 맞섰고, 실제로 자신의 기사를 실은 <경향신문>을 상대로 명예훼손회복청구소송을 제기했다.<sup>65)</sup>

그렇지만 신상목은 12월 22일에 산림법 위반과 국유재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sup>66)</sup> 조사과정에서 벌채권 매매를 둘러싸고 18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밝혀졌기 때문이다. 지리산 벌목허가권을 삼성홍업의 정기성 사장으로 부터 240만원에 매수한 것을 420만원에 매수하였다고 서남홍업 사장 안치연을 속여 180만원을 편취한 것이었다.<sup>67)</sup> 그는 1월 9일에 서남홍업 사장 안치연, 남선목재 기획부장 김학숙 등과 함께 구속기소되었다.<sup>68)</sup>

### 3) 내무부는 도벌사건으로부터 자유로운가

임업행정 문제를 놓고 내무부와 농림부는 갈등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었다. 내무부는 산림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서는 영림서를 폐지하고 일

일; “出頭한 辛相默氏 關聯없다고 主張”, <조선일보> 1964년 11월 22일.

63) 신상목과 길병래의 관계에 대해서는 뒤에 서술하였다.

64) “背後 搜查 不振은 現地 警察끼리 協調 않은 때문”, <동아일보> 1964년 12월 3일.

65) “京鄉 보도 公益 위해 正確. 新聞倫委, 申相默씨 提訴 기각”, <경향신문> 1965년 2월 5일.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1965년 2월 3일 회의를 열어 신상목의 제소를 “제소 이유 없다.”고 기각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 이유는 경향신문 1964년 11월 20일, 21일자 기사 중 신상목에 대한 기사는 허위보도라 할 수 없고, 공익을 위해 정확히 보도한 것이며 제소인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고의로 허위사실을 발표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다.

66) “檢察, 拘束범위를 擴大”, <경향신문> 1964년 12월 22일.

67) “枯死木 伐採權싸고 一百80萬원 騙取?”, <경향신문> 1965년 1월 6일.

68) “辛相默씨 등 拘束起訴”, <동아일보> 1965년 1월 11일.

반 경찰이 산림경찰을 대신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내무부는 1961년에 그리고 1964년 6월경에도 영림서 폐지론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 농림부에서는 강력히 반대하였다.<sup>69)</sup> 결국 내무부는 농림부 산림경찰과 협조하여 부정임산물을 단속할 수밖에 없었다.

내무부 장관 양찬우의 국회 증언에 따르면, 1964년 1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경찰 자체에서 약 11,440명에 이르는 부정임산물 관련자를 단속하였다. 그리고 전국에 도벌이 성행한다는 첩보에 의해 10월 15일부터 전국적으로 부정임산물을 단속하도록 시달하였다.<sup>70)</sup> 이러한 노력에도 함양군 마천면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던 도벌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함양경찰서를 비롯한 현지 경찰의 목인 아래 산림도벌이 성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벌업체의 대규모 도벌자행은 현지 경찰과의 유착이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도벌업체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밝힐 수 있는 단서는 남선목재 기획부장 김학숙이었다. 그가 남선목재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김학숙은 농림부 산림국에도 근무한 적이 있으며, 남선목재에 취직하여 도벌사건에 깊이 개입한 인물이었다. 그가 남선목재에 취직할 때, 영림서장이 나서서 취직 알선을 했다는 사실에서도 김학숙과 산림국 사이에 모종의 관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김학숙이 1964년 11월경에 함양경찰서장에게 6만원의 뇌물을 준 사실이 드러나고, 이것이 신문지상에 보도되었다.<sup>71)</sup> 그런데 뚜렷하게 죄상이 드러났는데도 김학숙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미온적이었다. 이리하여 ‘제식구’를 보호하기 위해 김학숙을 감싸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조사특위도 증언청취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민영남 의원은 “구속 검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검거를 안 하는 것”이

69)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2호, 1964.12.8.

70)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3호, 1964.12.9.

71) 11월 2일에 도경수사와 경위에게, 그리고 11월 3일에 함양경찰서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나 구속되었다.

라고 질타하였다.<sup>72)</sup> 김학숙은 12월 23일에 자수하여 구속되었는데, 체포될 때까지 자신의 집에 은신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이 그를 의도적으로 검거하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수사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배후권력에 대한 수사를 등한시하고, 단속 업무를 맡았던 영림서나 도벌에 직접 뛰어들었던 하청업자들만 수사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또한 도벌목 반출을 감시하는 경찰에 대해서는 수사선상에서 배제시켰다. 한마디로 수사권을 갖고 있던 경찰의 편과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배후권력을 철저히 수사하는데 인색한 경찰에 대해, <동아일보>는 사실을 통해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다.

경찰이 사건의 배후를 캐내지 못했던 것인지, 또는 캐내지 않았던 것인지를 우리는 분간할 수가 없다. 경찰의 수사태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의문점이 지적되어 있지만 그러한 의문점이 명쾌하게 해명되지 않는 한, 국민으로서서는 경찰이 어떤 압력을 받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짐작하게도 되고, 또는 경찰 자체 내부에도 어떤 약점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고 상상하게도 되는 것이다.<sup>73)</sup>

즉, 경찰이 상부의 압력이나 내부의 부정·부패로 인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경찰이 학생 데모에 대비하던 정력의 10분의 1이라도 산림남벌의 대비를 위하여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데모 학생을 수사하던 열의의 10분의 1이라도 산림도벌의 수사를 위하여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 4) 서남홍업과 남선목재, 그리고 고위층의 개입 여부

삼성홍업이 농림부에서 고사목과 풍도목을 불하받았으나 이를 포기하

72)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3호, 1964.12.9.

73) “(사실) “泰山鳴動鼠一匹”격이 된 智異山 盜伐事件 搜查”, <동아일보> 1964년 11월 30일.

기로 결정을 내릴 즈음에 안치연이 등장하였다. 안치연은 남원군 농협 운봉지소에서 서기로 일했으나 1964년 2월 29일에 사직하고<sup>74)</sup> 갑작스럽게 서남흥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이러한 회사에 삼성흥업은 240만원을 받고 불하목을 넘겼다. 그러나 서남흥업은 다시 남선목재에 420만원을 받고 넘겼다. 이 과정에서 신상목이 개입하게 되고, 남선목재는 서남흥업에 하청을 주었다. 신상목은 충남경찰국장으로 재직하면서 남선목재 사장 장영섭, 상무 장인섭과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sup>75)</sup>

서남흥업은 등기 절차를 밟지 않은 유명회사라 할 수 있는데, 사장 안치연은 길병래를 전무로 영입하였다. 주목할 점은 길병래와 신상목의 관계이다. 길병래는 신상목이 과거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사령관으로 재직할 때 빨치산 활동을 하다가 전향하여 경찰대 경위가 되었고 한때 자신의 동지였던 빨치산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인물이었다.<sup>76)</sup> 따라서 두 사람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다. 또한 길병래는 국회의원 길재호와도 가까운 사이였다. 최고위원이었던 길재호가 길병래의 고향인 금산에서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했을 때 선거운동을 지원한 인연으로 맺어진 관계였다.<sup>77)</sup> 안치연은 길병래의 이러한 인맥관계를 활용하기 위해 1964년 3월경에 전무로 영입한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지리산도벌사건 조사에서는 도벌업체와 고위층과의 유착관계를 밝히는 것이 관건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고위층 연루설이 11월 중순에 신문지상을 통해 세상에 전해졌다. 조사특위에서도 지리산 도벌사건이 고위층 인사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밝히려겠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차균희 농림부 장관이나 양찬우 내무부 장관, 민복기 법무부 장관 등은 국회 증언에서 고위층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발언을 했다.<sup>78)</sup> 11월

74)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9호, 1964.12.20.

75)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4호, 1964.12.10.

76)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8호, 1964.12.19.

77)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9호, 1964.12.20.

78)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2호, 1964.12.8, 제3호,

중순에 2억 원 상당의 도벌이 이루어졌고, 여기에 고위층이 개입되었다고 밝힌 바 있던 하삼식 경남도경국장도 12월 19일에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조사특위에서 태도를 바꾸어 고위층 개입이나 ‘2억 원 발설’을 한 적이 없다고 발언했으며, <동아일보>나 <경향신문>에서 허위보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sup>79)</sup> 이는 나중에 허위증언임이 밝혀지는데, 상부의 압력에 의해 태도를 바꾼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김학숙은 도벌업체와 경찰의 유착관계를 파악하는 단서일 뿐 아니라, 도벌업체와 산림직 관련 공무원과의 유착관계를 알아내는 데도 중요한 열쇠가 되는 인물이다. 김학숙은 농림부 산림국 임산과장 김철영과 수원 농과대학 동기동창이었고, 청와대 비서실 농림부연락관 오혁종의 후배였다. 그는 한때 농림부 산림국 기사로 일한 바 있었고, 전 영림서장 이흥의 취업 알선으로 남선목재에 들어간 인물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김학숙은 김철영을 만나 불하목 반출 연기를 부탁한 일도 있었다.<sup>80)</sup>

한편 오혁종은 장경순 전 농림부장관과 긴밀한 관계였다. 장경순이 농림부장관으로 재직할 때 오혁종을 농림부에 특채하였다는 사실에서<sup>81)</sup> 이들의 관계를 알 수 있다. 오혁종과 김학숙, 그리고 오혁종과 장경순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남선목재와 장경순이 연결되었다고 유추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도벌업체와 관련 공무원 사이에는 거미줄 같은 인맥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김학숙이나 오혁종을 면밀히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위층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었기에 수사 지침은 이를 미연에 차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고위층 연루설을 차단하기 위해 남선목재 사장이나 전무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지 않고 미온적으로 진행하였다. 도벌사건에 가장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던 업체는 남선목재였는데도 사건이 발생된 지 두 달이

1964.12.9.

79)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8호, 1964.12.19.

80)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9호, 1964.12.20.

81) 앞의 회의록.

넘도록 남선목재 사장 장영섭과 상무 장인섭을 구속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12월 19일에 열린 조사특위에서 조사위원들이 강력하게 질타하기도 했다.<sup>82)</sup>

무엇보다도 도벌행위가 일대 사건으로 확대된 배경으로 도벌이 대규모로 행해졌다는 것과 대규모의 도벌을 위해 케이블카(삭도)나 목마로를 설치하고, 댐을 건설하고, 관광도로라는 명목의 도로를 시설한 점을 들 수 있다. 지리산 800고지인 집재장으로부터 상봉 1,700고지까지 3개의 작업장이 있었는데, 목마로는 이러한 작업장을 연결하기 위해 설치되었다.<sup>83)</sup> 산업도로, 관광도로라는 명목의 도로는 앞서 보았듯이 신상목이 함양군수 임형휴와 교섭하여 설치된 것이다.<sup>84)</sup>

남선목재의 도벌행위를 비호하기 위해 농림부에 압력을 행사했던 오혁중은 12월 5일에 이르러서야 서울지검에 입건되었고, 수사본부인 부산지검으로 이첩되었다.<sup>85)</sup> 김학숙은 12월 23일에 서울중로서에 자수하여 구속되었으며, 1965년 1월 9일에 구속기소되었다.<sup>86)</sup> 12월 28일에는 삼성공업 상무 정기봉이 사기혐의로 구속되었으나 1965년 1월 8일에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이어 1965년 1월 3일에는 남선목재 상무 장인섭이 산림법 위반혐의로 구속되었다.

도벌업체와 고위층과의 연루문제를 명쾌하게 풀어내지는 못했지만 1965년 1월에 들어서 신문지상에 보도된 고위층 관련설이 전혀 근거 없지는 않았음이 밝혀졌다. 농림부장관 장경순이 그와 동기생인 영림서장

82)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査特別委員會 會議錄』 제8호, 1964.12.19.

83) “智異山을 벗기는 人間벌레 이려고도 무슨 山林綠化인가”, <경향신문> 1964년 11월 14일.

84)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査特別委員會 會議錄』 제9호, 1964.12.20.

85) “智異山盜伐事件 調査團에 壓力? 靑瓦臺 政務秘書室 吳氏 입견”, <동아일보> 1964년 12월 7일; “靑瓦臺 職員을 입견 智異山盜伐사건. 業者 유리하게 指示”, <경향신문> 1964년 12월 7일.

86) “逃避한 南鮮木材 企劃部長 金學疇씨를 拘束”, <동아일보> 1964년 12월 23일. 이 기사에서 金學疇는 ‘金鶴璿’의 誤記이다.

황석규와 장관실에서 만난 후 불하승인서가 결재되었다는 사실에서 도벌 사건에서 자유로운 처지는 아니었다. 또한 공화당 민병권(함양·거창) 의원이 불하 과정에서 특정인사를 위해 나섰던 정황도 포착되었다. 그렇지만 사건 수사가 3개월이 지나도록 거물급은 구속되지 않았고, 그동안에 증거가 인멸되어 의혹만을 남긴 채 사라지게 되었다.

#### Ⅳ. 지리산 도벌사건이 산림정책에 미친 영향

정부는 지리산 도벌사건에서 드러난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조사·색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임산물 단속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 국무회의에서는 1965년 7월 16일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임산물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기로 결의한 것이다.<sup>87)</sup> 10월 13일, 국회 농림위원회에 참석한 차균희 농림부 장관은 “상습적이고 악질적이고 대량적인 도벌을 하는 경우에는 사형까지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한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도·남벌문제를 처리하고자 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민정당의 박찬 의원은 농림부 장관의 ‘사형’ 발언은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임산물에 대한 범법행위를 중하게 저질렀다고 해도 정치인들이나 또는 보통 사회에서 저지른 범법행위보다 가벼우리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sup>88)</sup>

국무회의의 결의에 따라 법령 개정을 위한 수순을 밟았고,<sup>89)</sup> 1966년 3월

87) “範圍 擴大·罰則 強化 林產物團束法 改正”, <경향신문> 1965년 7월 16일.

88)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3회 제1호, 1965.10.13.

89) 앞의 회의록;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4회 제4호, 1966.2.4;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4회 제5호, 1966.2.5.

16일에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sup>90)</sup> 3월 29일에 공포하여 4월 29일부터 시행한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정임산물을 몰수하며,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임산물은 몰수한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처분한 가액을 피해자에게 교부한다. ② 부정임산물을 적재하거나 운송하는 자동차 또는 선박은 그 등록을 취소 또는 말소하고 운전사의 운전면허와 운송사업자의 사업면허를 취소하며, 말소 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등록 또는 면허를 할 수 없다. ③ 임산물을 제재하기 위하여 제재시설을 원하는 자는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으로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sup>91)</sup>

지리산 도벌사건은 산림청 신설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였다.<sup>92)</sup> 국회 농림위원회는 도벌사건을 계기로 산림행정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산림기구의 일원화, 산림청 신설 등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sup>93)</sup> 1965년 5월 20일 이종근 의원 외 14인이 산림청 설치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며, 8월 2일 이종근 의원은 ① 치산문제에 대한 국가의 확고한 의사와 투철한 문제의식이 없으며, ② 산림의 공공성과 특수성에 비추어 국가의 재정 지원이 강력해야 하는데도 총 예산의 1% 밖에 되지 않으며, ③ 산림보호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민간의 자발적 임업투자를 유치할 사회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으며, ④ 긴급하고도 방대한 산림행정을 겨우 1개 국 단위의 미약한 행정기구에 맡기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산림행정기구를 개편·강화하여 농림부 산하에 산림청을 신설할 것을 강

90) 國會事務處, 『國會會議錄』, 제55회 21호, 1966.3.16; “林産物團束改正案 國會本會議 통과”, <경향신문> 1966년 3월 16일.

91)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6.11.20).

92) 산림청, 『대한민국 산 세계는 기적이라 부른다』, 56쪽; 이계민, 『숨은 기적들: 숲의 역사, 새로 쓰다』, 나남, 2015, 48~49쪽.

93) “智異山 盜伐 國會調査團 派遣기로”, <경향신문> 1964년 11월 18일.

조하였다.<sup>94)</sup>

그러나 산림청 신설은 1년 동안 진전을 보지 못하다가 1966년 7월에 이르러 실현을 보게 되었다. 1966년 7월 13일, 내무위원회에서 산림청 설치에 관한 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며,<sup>95)</sup> 14일에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후 1966년 8월 3일 개정 법률에 의해 산림청 신설 규정이 마련됨으로써 1967년 1월 1일자로 산림청이 발족되었다.<sup>96)</sup>

산림청은 농림부 소속 외청으로 임정국·조림국·영림국 등 3국으로 구성되었다.<sup>97)</sup> 초대 산림청장으로 김영진이 취임하였고, 본청에서만 176명의 직원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전국 각 시·도에 보호직 412명이 배치됨으로써 산림청은 총 588명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 산림청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으며, 지방정부의 산림 담당 부서(각 도의 산림과, 각 시·군의 산림계)를 지휘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점에서<sup>98)</sup> 한계가 있었다. 산림청 발족은 독립관청으로서 산림정책을 펼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만, 발족 이후의 산림녹화사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여 한때 농림부 내국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sup>99)</sup> 농림부 외청으로 있던 산림청은 1973년 3월에 내무부로 이관되었다.

지리산 도벌사건은 또한 화전 정리사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지리산 일대의 화전민과 지리산 기슭의 주민 8할이 도벌단의 정보원이 되

---

94)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2회 제1호, 1965.8.2;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8회 제1호, 1966.9.8.

95) 國會事務處, 『內務委員會 會議錄』 제57회 제8호, 1966.7.13;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8회 제1호, 1966.9.8.

96) 산림청, 『대한민국 산 세계는 기적이라 부른다』, 79쪽.

97)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6.11.24).

98) 이경준, 「제1차 및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110쪽.

99) 이계민, 『숨은 기적들: 숲의 역사, 새로 쓰다』, 나남, 2015.

었다고 보았으며<sup>100)</sup> 각종 도벌의 근원이 화전민에게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실제로 화전민은 도벌사건에 가담하였으며, 이들이 목기제조업자에게 판매한 도벌목의 양도 상당수에 이르렀다.<sup>101)</sup> 또한 그들은 농작지로서 비교적 적당한 땅을 선택하여 산림을 소각하고 그 적지를 조잡하게 개간하여 감자·보리·조·콩 등을 재배하였으며, 수년이 지나 지력이 감퇴하면 다시 적지를 찾아 산림을 소각하고 모경을 감행하였기에 산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sup>102)</sup> 따라서 산림의 황폐화를 막고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화전민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다.

1965년 8월 9일, 이종근 의원 외 10인이 <국토보존 및 화전민 대책 확립에 관한 건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이 건의안은 예비심사 단계를 거치지 않은 채 계류되었다. 이어 1965년 10월 19일에 정부는 <화전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하였다. 1966년 2월 9일 국회 농림위원회에서 농림부차관은 화전민이 무단으로 입산해서 개간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에서 <화전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sup>103)</sup> 정부안은 농림위원회 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3월 15일에 이르러 소위원회의 수정안이 통과되었다.<sup>104)</sup> 이어 1966년 3월 19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sup>105)</sup>

1966년 4월 23일에 제정되어 5월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전 정리에 대한 법률>은 “산림에 불을 놓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를 개간하여 농경지로 사용 또는 사용하였던 토지를 정리”함으로써 ① 국토의 황폐화 방지, ② 산업 발전에 기여, ③ 화전 경작자의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하였다.<sup>106)</sup> 그리고 화전 정리의 대상지를 규정하였는데, ① 보안림, 채

100) “智異山 증턱에 發電所와 製材所까지”, <경향신문> 1964년 11월 5일.

101) “火田民 定着地 開墾 智異山 등 盜伐 막기 위해”, <마산일보> 1965년 4월 10일.

102) 산림청, 『조선임업사』 (상), 산림청, 2000, 380쪽.

103)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4회 제6호, 1966.2.9.

104)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5회 제4호, 1966.3.15.

105)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8회 제1호, 1966.9.8.

106)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6.11.24).

종림 또는 경사 20도 이상의 산림 안에 있는 화전은 산림으로, ② 경사 20도 이하의 산림 안에 있는 화전은 농경지로 조성하도록 하였다.<sup>107)</sup> 이는 경사 20도 이하의 화전은 산림 황폐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식하여 이러한 지역의 화전을 농경지로 인정하고 합법화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산림으로 복구되어 경작지를 잃거나 부족하게 된 화전민에게는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대토로써 개간지를 양여하고 주택을 마련하여 줌으로써 화전민의 집단이주를 가능하게 했다.<sup>108)</sup>

정부는 <화전 정리에 대한 법률>에 따라 1967년 1월 20일부터 7월 20일까지 산림소유자, 화전 경작자, 산림계에 대해 화전 실태를 신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1967년 7월 20일부터 1969년 1월 20일까지 전국적으로 화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화전면적이 46,190ha, 화전민 호수는 135,138호로 나타났다.<sup>109)</sup> 신고된 화전의 대부분은 국유림 내에 위치하고 있었고, 경사 20도 이상의 급경사지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화전지에 대해 정부는 화전 정리사업을 실시하였는데, 그 실적은 아래 <표 2>와 같다.

107) 1966년 11월 16일에 제정되어 시행된 <화전 정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경사 20도 이하의 산림 내에 있는 화전이라도 ① 댐 또는 저수지유역에 위치한 것, ② 관광에 이용되는 도로의 주변에 위치한 것, ③ 지정문화재 또는 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것, ④ 시 또는 읍 행정구역 안에 위치한 것, ⑤ 관광지 보존상 산림으로 조성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것, ⑥ 산림경영상 산림으로 조성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것, ⑦ 국방상 산림으로 조성할 구역 안에 위치한 것, ⑧ 농경지로 조성하여도 그 목적을 달할 수 없는 것은 산림으로 조성하도록 하였다.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6.11.24).

108) 강대현, 「화전정리에 관한 고찰」, 『산림보호』 56, 1970.4, 31쪽.

109) 신민정, 「한국 정부의 화전정리사업 전개과정과 화전민의 실태(1965-1979년)」, 『경제사학』 제50호, 2011.6, 75쪽.

〈표 2〉 화전정리사업 실적<sup>110)</sup>

연도별	화전민 이주 정착	대토 지급	화전지 정리		
			산림 복구	농경지 조성	계
1965	3,000호	4,228ha	2,464ha	536ha	3,000ha
1966	1,814호	2,364ha	1,527.5ha	68ha	1,595.5ha
1967	2,000호	2,106ha	2,076.5ha	95.5ha	2,172ha
1968	1,200호	968ha	1,468.7ha		1,468.7ha
1969	1,551호	894ha	435.05ha		435.05ha
계	9,565호	10,560ha	7,971.75ha	699.5ha	8,671.25ha

산림청 신설이나 화전 정리사업은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했을지라도 도벌이나 남벌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사실은 아래 <표 3>에 제시된 1965년부터 1969년까지의 도·남벌 피해실적 대비표를 살펴보는 것으로 확인 가능하다.

〈표 3〉 도·남벌 피해실적 대비표<sup>111)</sup>

	건수	비율	재적	비율
1965	34,714건	100%	50,798m <sup>3</sup>	100%
1966	35,332건	101%	38,020m <sup>3</sup>	74%
1967	24,316건	70%	23,493m <sup>3</sup>	46%
1968	20,362건	58%	22,283m <sup>3</sup>	43%
1969	17,782건	51%	17,449m <sup>3</sup>	34%

위 <표 3>에서 피해 건수와 재적은 도벌, 무허가 벌채, 무허가 개간, 기타 등을 합한 수치이다. 1965년에서 1969년 사이의 기간 동안 피해 건수가 51% 감소하고, 피해 재적이 34% 감소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도벌, 무허가 벌채, 무허가 개간 등이 존재하고 있어 1969년에 피해 건수

110) 강대현, 「화전정리에 관한 고찰」, 33쪽.

111) 권오태, 「도남벌 방지에 대하여」, 『산림보호』 54, 1970.10, 40쪽.

17,782건, 피해 재적 17,449m<sup>3</sup>에 이르고 있다. 그리고 1969년의 부정임산물 단속상황을 보면, 입건 건수가 2,171건이었고 이 중에서 검찰 송치 1,775건, 즉심 회부 232건, 미처리건수 164건이었다.<sup>112)</sup> 이는 법적 제재와 단속활동을 아무리 강화하더라도 임산물 이용의 난방과 취사구조를 근대적인 연료를 사용하는 구조로 변화시키지 않는 한 부정임산물 문제를 근절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1960년대, 1970년대에 걸쳐 난방이나 취사구조를 연탄이나 유류로 대체시키려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연료나 난방을 목적으로 소규모의 도벌이 행해지고 있던 농촌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0년대 말에 이르러서야 도벌이나 남벌이 감소하고 산림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다.

## V. 맺음말

산림이 황폐하게 된 주요 원인의 하나로 취사와 난방을 목적으로 소규모로 행해지던 도벌과 남벌을 거론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는 생활을 위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인식해 왔다. 그러나 정작 산림을 황폐하게 만든 보다 심각한 것은 후생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군에서 자행한 도벌과 남벌, 그리고 도벌업자에 의한 대규모의 불법적인 도벌과 남벌이었다.

1964년 10월에 발생한 지리산 도벌사건은 산림을 크게 훼손한 심각하고 중대한 범죄행위였다. 이 사건에 농림부·내무부·도벌업체 등이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얽혀 있었으며, 권력을 배경으로 대담하게 도벌행위가 자행되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중대 범죄행위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112) 앞의 글, 40쪽.

파장을 일으켰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쳤다. 이 사건의 중심인물은 지리산 빨치산 토벌에 족적을 남겼고 전북 경찰국장과 강원도 경찰국장을 지낸 신상목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물은 장경순이었다. 그는 5·16 쿠데타에 주체세력의 일원으로 가담하였고, 농림부장관을 지냈으며, 사건 발발 당시 국회 부의장이었다. 따라서 도벌사건의 핵심 쟁점은 도벌업체와 고위층과의 유착관계를 철저히 밝히는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국회에서도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진상규명에 나섰다.

그러나 김·경의 수사활동도 미온적이었고, 국회의 조사특위도 고위층의 유착관계를 뚜렷이 밝혀내지 못하였다. 민정으로 이양된 지 얼마 안되어 일어난 사건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사회적 파장을 우려하여 박정희 정부가 의도적으로 고위층의 비리를 덮어나갔다는 의혹을 떨쳐내기 어렵다. 고위층의 압력으로 사건의 핵심인물을 파헤치지 못함으로써 이 사건에 내재된 부정과 흑막, 그리고 야만의 역사를 제거하는데 실패하였다.

지리산도벌사건 이후, 정부는 권력형 비리를 철저히 조사·색출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운 것이 아니라 임산물 단속에 대한 법령을 강화하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하고자 했다. 이리하여 1966년 3월 29일에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을 개정, 공포하여 임산물 단속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하였다. 지리산 도벌사건은 또한 산림청 신설을 촉발시키고, 화전 정리사업을 단행하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임산물 단속에 대한 법령 강화, 산림청 신설, 화전 정리사업은 도벌이나 남벌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었을지라도 어느 정도 산림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는 있었다. 도벌이나 남벌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목재 수급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했으며, 난방과 취사구조를 임산물 이용 방식에서 근대적인 연료 이용 방식으로 변화시켜 나가야 했다. 1970년대 말에 이르러 난방과 취사구조가 연탄이나 유류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대체되면서 도벌이나 남벌이 감소하고 산림의 피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 참고문헌

### <자료>

#### 1. 원자료

<경향신문>, <동아일보>, <마산일보>, <조선일보>.

國會事務處, 『國會 會議錄』 제45회 24호, 1964.11.28. / 제45회 39호,  
1964.12.7. / 제55회 21호, 1966.3.16.

國會事務處, 『農林委員會 會議錄』 제52회 제1호, 1965.8.2. / 제53회 제1호,  
1965.10.13. / 제54회 제4호, 1966.2.4. / 제54회 제5호, 1966.2.5. / 제  
54회 제6호, 1966.2.9. / 제55회 제4호, 1966.3.15. / 제58회 제1호,  
1966.9.8.

國會事務處, 『內務委員會 會議錄』 제57회 제8호, 1966.7.13.

國會事務處, 『智異山盜伐事件 調查特別委員會 會議錄』 제2호, 1964.12.8. /  
제3호, 1964.12.9. / 제4호, 1964.12.10. / 제6호, 1964.12.14. / 제8호,  
1964.12.19. / 제9호, 1964.12.20.

#### 2. 간행된 자료

강대현, 「화전정리에 관한 고찰」, 『산림보호』 56, 1970.4.

권오태, 「도남벌 방지에 대하여」, 『산림보호』 54, 1970.10.

金瑩筆, 『燈불을 찾아서(돌아온 빨찌산의 手記)』, 한국출판사, 1952.

산림청, 『조선임업사』 (상), 산림청, 2000.

李鍾根, 「治山治水와 政治」, 『산림보호』 14, 1966.5.

任慶彬, 「山林盜伐防止와 燃料對策」, 『지방행정』 28권 319호, 1980.5.

장경순, 『나는 아직도 멈출 수 없다』, 오늘, 2007.

座談會, 「燃料林과 山林保護의 效果的 達成方案」, 『산림보호』 10, 1966.1.

韓國政治問題研究所, 『正風』 6, 創民社, 1986.

## 3. 기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2016.11.24).

대한민국헌정회 홈페이지(<http://www.rokps.or.kr>, 2016.12.10).

## &lt;연구논저&gt;

白南柱 編著, 『疑惑 속의 20年』, 개조출판사, 1965.

산림청, 『대한민국 山 세계는 기적이라 부른다』, 1995.

신기남, 「빨치산 토벌대 ‘지리산 보아라부대」, 『역사비평』 2, 1988, 390~395쪽.

신민정, 「한국 정부의 화전정리사업 전개과정과 화전민의 실태(1965-1979년)」, 『경제사학』 제 50호, 2011.6, 69~103쪽.

윤여창, 「한국의 산림녹화」, 『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5, 13~97쪽.

이경준, 「제1차 및 제2차 치산녹화 10개년 계획」, 『한국의 산림녹화 70년』,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15, 101~185쪽.

이계민, 『숨은 기적들: 숲의 역사, 새로 쓰다』, 나남, 2015.

이우연, 『한국의 산림 소유제도와 정책의 역사』, 일조각, 2010.

趙甲濟,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3, 조선일보사, 1998.

최병택, 『일제하 조선임야조사사업과 산림정책』, 푸른역사, 2010.

## A Timber Theft Scandal in Jiri Mountain and Its Impact on Forest Policy

Yim, Song-Ja\*

This article illuminated in detail the timber theft scandal in Jiri Mountain in October 1964. Four key points of the scandal were analyzed as follows. Firstly, this study has analyzed the details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s timber disposal and a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and companies which committed timber theft. Secondly, it examined the behind-the-scenes power of the scandal and inspected whether the power intervened or not in the timber theft. Thirdly, this article investigated if the Ministry of Home Affairs was far from that scandal. Finally, this article examined Seonam Heungeop (Southwest Company), Namseon Mokjae (South Korea Timber Company) and intervention of high-ranking officials in the scandal. Besides the above-mentioned four points, this study also researched this scandal's impact on forest policy.

The timber theft scandal in Jiri Mountain gave a big shock to the general public because high-ranking officials were involved and the theft was perpetrated on a large scale. Sin Sang-muk and Jang Gyeong-sun were central figures of the scandal. A key issue of the scandal was to find out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illegally timber-felling companies and high-ranking officials. However, the prosecution and the police investigated the incident while taking a lukewarm attitude. Special investigation committee

---

\* HK Research Professor, Sunchon National University

organized by the National Assembly could not reveal the connection between high-ranking officials and the timber theft scandal.

Even if the suspicions of the scandal was not dispelled, this incident and its investigation exerted an influence on the changes of the forest policy. It resulted in the foundation of the Office of Forestry and prompted the integration of forest organizations. Also, the scandal had an influence on rearrangement of slash-and-burn fields. Those efforts could not become thorough measures against the timber theft or reckless deforestation, but could decrease the damage of the forest to a certain degree.

Key words: Jiri Mountain, Timber Theft Scandal, liquidation of shifting cultivation, Sin Sang-muk, Jang Gyeong-sun

필자 E-Mail: yimsj02@hanmail.net

투고일: 2017년 01월 04일 / 심사완료일: 2017년 01월 25일 / 게재확정일: 2017년 01월 26일